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령	제	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한다.

제2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소장품의 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관리하는 소장품의 보존

· 관리, 소장품의 열람·복제와 그 비용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14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방법”을 “방법, 확인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수수료 없음”을 “수수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u>납부하여야</u>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납부해야</u> ----- . <u><단서 삭제></u> ③ ~ ⑤ (현행과 같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u>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⑤ <u>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u> ⑥ (생략)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납 부해야 ----. <단서 삭제></u> ③·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현행과 같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u>제3조(소장품의 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관리하는 소장품의 보존·관리, 소장품의 열람·복제와 그 비용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 정한다.</u>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생략)	제47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② ----- ----- ----- ----- -- <u>납부해야</u>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u>	<삭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삭제>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생략)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② ----- ----- ----- -----.
	<단서 삭제>

<u>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 (생략) <u>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u> ⑤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현행과 같음)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u>방법</u>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방법, 확인 수수료</u>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생략)	제18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삭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u>납부하여야</u> 한다. <u>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납부해야</u>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 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 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u>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u> <u>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u> <u>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u> <u>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u> <u>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⑤ <u>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u> <u>다.</u>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삭제></u> ③·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3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 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u> <u>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u>	제3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단서 삭제></u>

<u>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 (생 략) <u>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u>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u>20일 이내</u> 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u>납부하여야</u> 한다. <u>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u>20일 이내</u> ----- ---- <u>납부해야</u>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u>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날 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